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4. 12. 17.>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제8조의7제2항 관련)

구분 1일 이용인원 (명)	매표실		대합실 (㎡)	정류장소 (㎡)		승강장 (승차 대기장) (㎡)	주차장 (유도차로, 주차장소 포함) (㎡)	화장실				사무실 (개소)	안내실 (㎡)	배차실 (개소)	승무원 휴게소 (㎡)	간이 세차장 (㎡)
	매표 창구 수 (개)	면적 (㎡)		승차장	하차장			남자용		여자용	세면기 (개)					
								대변기 (개)	소변기 (개)	대변기 (개)						
500 이하	1	4	60	91	46	12	200	2	3	5	2	1	6	1	10	20
501 ~ 1,000	1	4	95	91	46	12	200	2	3	5	2		6		10	20
1,001 ~ 2,000	2	7	142	136	91	18	310	2	3	5	2		6		10	32
2,001 ~ 3,000	2	7	237	227	91	30	509	2	4	6	2		6		10	52
3,001 ~ 4,500	3	10	353	338	136	45	749	3	6	9	3		6		10	76
4,501 ~ 6,500	4	13	432	349	136	55	829	4	7	11	3		8		10	110
6,501 ~ 9,000	5	17	607	480	195	78	1,155	5	7	12	3		8		10	150
9,001 ~ 12,000	6	20	821	655	266	105	1,567	6	10	16	4		8		12	200
12,001 ~ 15,500	10	36	1,076	848	344	138	2,036	7	14	21	5		8		15	230
15,501 ~ 19,500			1,370	1,084	432	175	2,586	8	16	24	6		8		19	329
19,501 ~ 24,000			1,700	1,350	490	217	3,215	11	22	33	8		8		24	399
24,001 ~ 29,000			1,799	1,609	643	229	3,474	12	24	36	9		10		24	399
29,001 ~ 35,000			2,168	1,940	779	277	4,203	15	30	45	11		10		29	489
35,001 ~ 42,000			2,609	2,336	935	333	5,051	18	36	54	13		10		35	589
42,001 ~ 50,000			2,877	2,420	967	368	5,211	19	38	57	14		10		35	599
50,001 이상			3,440	2,894	1,162	440	6,299	22	44	66	17		10		45	719

비고

1. 1일 이용인원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의 1일 평균 출발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매표실의 매표창구는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되, 나머지 매표창구는 무인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무인발권기로 매표창구를 대체하는 경우 무인발권기 1대는 매표창구 1개로 본다.
4. 대합실에는 승차를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 등을 위하여 의자를 설치해야 한다.
5. 안내실은 대합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6. 배차실은 사무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7. 간이세차장은 터미널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주차장을 운송사업자의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